

202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참여하실 장애인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총 5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5명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5년 5월~12월(8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 월 56시간
- 근무지 : 영도구우체국,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 보수 : 월561,680원(금오십육만일천육백팔십원)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근무내용 : 프로그램 보조, 환경정비 등

※ 단, 배치기관 사정상 희망직무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음.

2. 모집기간 : 2025. 4. 21.(월)~5. 2.(금) 09:00~18:00 (토·일 제외)

3.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1960.1.2.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2025년도 개정사항

- 참여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등급에 따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 가능 여부 확인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면접일자, 장소 추후 통보)

5. 제출서류

<필수서류>

- ①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 (인적사항, 연락처 등 식별 가능토록 정확히 기재)
 -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검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장애인일자리사업)
-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첨부서류</th></tr> <tr> <td>공통사항</td><td>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td></tr> <tr> <td rowspan="10">선택사항</td><td>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td></tr> <tr> <td>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td></tr> <tr> <td>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td></tr> <tr> <td>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td></tr> <tr> <td>군복무 복무확인서</td></tr> <tr> <td>학교 재학 재학증명서</td></tr> <tr> <td>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tr> <tr> <td>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td></tr> <tr> <td>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td></tr> <tr> <td>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td></tr> </table>	구분	첨부서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구분	첨부서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접수방법 : 방문 접수

7. 접 수 처 : 영도구청 복지사업과(4층) ※ 영도구 태종로 423, 404호

8.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기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도구 복지사업과 장애인일자리담당자 (☎419-4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